

선	기관의 장
람	



제 719 호

2006년 11월 3일 금요일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-1183호(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공고·열람) 3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-1189호(식품위생법 위반에따른청문실시공시송달) 5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-1190호(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(안)입법예고) 6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인천광역시 남동구

편집 : 문화홍보실

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- 1183호

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한 공고·열람

『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』을 위하여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8조』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열람 하오니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있는 경우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6. 11. 3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1.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

☐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가. 공공시설

- 학교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폐지		학 교	초등학교 (오 봉)	남동구 남촌동 227번지 일원	11,252	감)11,252	-	2005 1. 14	개발 제한 구역

○ 변경(폐지)사유서

학 교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입 안 사 유
초등학교 (오 봉)	면적변경(감 11,252㎡) - 기 정 : 11,252㎡ - 변 경 : 0㎡	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폐지

나. 교통시설

- 도 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 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3	9	국지 도로	1,450	광3-6	논현동 산30-1	일반도로		1987 09.14	·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확폭 (L=356m, B=9~12m)
변경	소로	1	3	9~12	국지 도로	1,220	광3-6	대3-21	일반도로			· 일부구간 (L=230m) 폐지

- 변경사유서

시 설 명	변경내용	변 경 사 유
소1-3호선	-연장 1,450m → 1,220m -폭원 : 9m → 9~12m	○ 주요 통과구간인 주적지구내 건축물에 저촉된 일부구간에 대하여 선형변경 하고, 인접 도시계획시설(공원: 주적체육 공원)에 접하도록 확폭 ○ 대3-21호선(도림택지~논현택지 구간)과 소1-3호선간의 중복 결정된 구간에 대하여 일부구간을 폐지

2. 공고방법 : 일간신문(2개사), 남동구홈페이지 게재, 구보 게재,
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

3. 열람기간 : 열람일로부터 14일간

4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453-2964)

5. 첨부 : 도면게재 생략

【입안 참여자】

도시관리계획(시설 : 학교 · 도로)

- 남동구청 부구청장 황의식, 도시국장 함형호, 도시계획과장 김복규
도시계획담당 김기봉, 담당자 최진우

- 도시계획결정 향후 추진일정

▶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2005. 11월중), 결정고시 (2005. 11월중)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- 1189호

공 시 송 달

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귀하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제 목 :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
2. 당 사 자

업종	신고번호	업소명	업주명	주민등록 번 호	소재지	주 소
일반음식점	만수1-380	마식당	박희순	711105-2*****	만수동 948-3	불명

3. 처분내용 : 영업소 폐쇄
4. 청문사유 : 영업시설물 전부멸실
5. 법적근거
 - 식품위생법 제21조, 제22조 및 동법 제58조
 - 식품위생법 제64조
6. 청문내역
 - 기 관 명 : 인천광역시남동구청
 - 담당부서 :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(032-453-2622)
 - 청문일시 : 2006. 11.16 (목) 11:00
 - 청문장소 : 남동구청 환경위생과(6층) 사무실
 - 청문주재자 :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
7. 기 타 : 청문 불참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(영업장 폐쇄).

2006. 11. 3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- 1190호

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6년 11월 3일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1. 조 례 명 : 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2. 개정취지

- 구월근린공원내 운동장이 마사토(흙)에서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개선됨에 따라 운동장사용료를 남동공단근린공원과 구월근린공원으로 분리하고, 구월근린공원에 대하여는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존 운동장사용료를 소폭 인상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쾌적한 시설물 제공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함

3. 주요내용 : “ 본문 ” 참조

4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(참조 : 도시정비과장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(453-2851), FAX(453-2569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5. 붙임 : 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”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부대시설”이라 함은 전기 및 방송시설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”을 “운동장의 사용 허가시간내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남동구 주최 행사 등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동장을 연중 상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. 다만, 구월근린공원은 사용허가시간에 한한다.

제6조 제목 “사용시간”을 “사용허가시간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운동장의 일일 사용허가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남동공단근린공원

- 조기 05:00 ~ 09:00 (동계 06:00 ~ 09:00)

- 주간 09:00 ~ 18:00 (동계 09:00 ~ 18:00)

- 야간 18:00 ~ 22:00 (동계 09:00 ~ 18:00)

구 월 근 린 공 원

- 하절기(3 ~ 10월) 07:00 ~ 19:00

- 동절기(11 ~ 2월) 08:00 ~ 18:00

같은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허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운동장 사용의 우선순위)이 조례에 의한 공원운동장 사용 우선 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.

1. 사용허가를 받은 자
2.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

제7조(사용료)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운동장의 사용 허가시간내에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운동장의 사용료는 운동장, 부대시설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 내지2와 같다.
- ③운동장의 사용료는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- ④제6조3항에 의한 사용허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4호 및 단서를 신설한다.

1. 구민을 위한 행사 및 각종 경기대회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
3. 관내 초.중.고등학교 축구부 및 구 지원 유소년단체 (월 2회 면제)
4. 주민의 여가활동 (주 1회 면제)

다만, 제3호 및 제4호는 구월근린공원에 한한다.

제9조제1호중 “사용 3일전까지”를 “사용 1일전까지”로 하고, “사용료의 50/100”를 “사용료 전액”으로 하며, 같은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 한 경우로서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

제10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3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1】

남동구 공원 운동장 사용료

■ 남동공단근린공원

(단위:원)

사용구분 (사용허가시간내)		체육경기		체육경기외		비고
사용시간	분 류	평일	공휴일	평일	공휴일	
9시간	09:00 ~ 18:00	50,000	70,000	100,000	130,000	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
4시간이하사용	①: 09:00 ~ 13:00 ②: 14:00 ~ 18:00	20,000	30,000	40,000	60,000	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동일행사 또는 동일인의 1 일내 오전,오후 연속사용하는 제한

■ 구월근린공원

(단위:원)

사용구분 (사용허가시간내: 2시간 기준)		평일	공휴일	비고
일 반		50,000	70,000	
관 내 초.중.고 축구부 · 구지원 유소년 축구단체	면 제 추가사용 시 일반요금의 50% 감면	월 2회 25,000 35,000		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
관 외 초.중.고 축 구 부	일반요금의 50% 감면	25,000	35,000	“

【별표2】 부대시설 사용료

사용구분	사용료	비 고
전기및방송시설	30,000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</u>	<u>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</u>
제2조(정의)	2조(정의)
1.~3. (생략)	1.~3. (현행과 같음)
(<u>신설</u>)	4.“부대시설”이라 함은 전기 및 방송 시설을 말한다.
제3조(사용허가)①운동장을 사용하고 자하는 자와 ----- ----- -----	제3조(사용허가)①운동장의 사용 허가 시간내에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----- -----
②~③(생략)	②~③(현행과 같음)
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	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
1.남동구 <u>경,조</u> 행사등	1.남동구 <u>주최</u> 행사 등
2.~7.(생략)	2.~7.(현행과 같음)
제5조(시설의 개방)①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운동장을 연중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한다.	제5조(시설의 개방)①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동장을 연중 상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. 다만, 구 월근린공원은 사용허가시간에 한한 다.

현행	개정안
제6조(사용시간) ①운동장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. 조기:05.:00~08:00 까지(동계06:00~09:00까지) 주간:08.:00~19:00 까지(동계09:00~18:00까지) 야간:19.:00~23:00 까지(동계18:00~23:00까지) ② (생략) (신설) (신설)	제6조(사용허가시간) ①----- 사용허가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남동공단근린공원 - 조기 05:00 ~ 09:00 (동계 06:00 ~ 09:00) - 주간 09:00 ~ 18:00 (동계 09:00 ~ 18:00) - 야간 18:00 ~ 22:00 (동계 09:00 ~ 18:00) 구 월 근 름 공 원 - 하절기(3 ~ 10월) 07:00 ~ 19:00 - 동절기(11 ~ 2월) 08:00 ~ 18:00 ② (현행과 같음) ③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허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제6조의2(운동장사용의 우선순위)이 조례에 의한 공원운동장 사용 우선 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. 1. 사용허가를 받은 자 2.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
제7조(사용료)①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운동장의 사용료는 운동장, 부대시설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내지 3와 같다. ③ 운동장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납부한다. (신설)	제7조(사용료)①운동장의 사용허가시간 내에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운동장의 사용료는 운동장, 부대시설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내지 2와 같다. ③운동장의 사용료는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④제6조3항에 의한 사용허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안
제8조(사용료면제) 1. 구민을 위한 경.조 행사 및 각종 경기대회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.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행사 (신설) (신설) 제9조(사용료의 반환) 1 ----- ----- 사용 3일전까지 ----- 사용료 의 50/100을 반환 2.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(생략) ②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	제8조(사용료면제) 1. 국민을 위한 행사 및 각종 경기대회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. 삭제 4. 관내 초.중.고등학교 축구부 및 구 지원 유소년단체(월 2회 면제) 5. 주민의 여가활동(주1회) 다만 제4호및제5호는 구월근린공원에 한한다. 제9조(사용료의 반환) 1. ----- ----- 사용 1일전까지 ----- 사용료전액 반환 2.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 한 경우로서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다만, 제3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.